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8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과오납 보험료 등을 환급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 연장	2
--	---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58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과오납 보험료 등을 환급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 연장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은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와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 개정안은 이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91조(시효)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u>	<삭제>
3. <u>보험급여를 받을 권리</u>	<삭제>
4. <u>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u>	<삭제>
5. <u>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u>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u>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u>
	2. <u>보험급여를 받을 권리</u>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③ 제1항 및 제2항-----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제3항 -----제4항----- -----.
--	--

※ 시행일: 공포한 날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검토의견

□ 시효(時效)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¹⁾.

- 참고로, 「민법」²⁾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

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680

2)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으로 하면서,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단기소멸시효 기간(1년·3년)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3)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4) 및 「지방재정법」 5)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91조제1항6)은 ①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②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③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④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⑤

-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속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5)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⑥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권리를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됨.

- 소멸시효 완성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 환급금은 약 31만 건, 169억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보험급여(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⁷⁾는 약 5.8만 건, 437억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보험급여비용은 약 2.8만 건, 28억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은 약 39만 건, 58억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7) 보험급여는 ① 요양급여·건강검진, ② 요양비, ③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④ 부가급여(임신·출산·진료비), 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환급* 등이 해당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①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의 경우 요양급여 또는 건강검진 실시와 동시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완성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이 불필요하고, ② 요양비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은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시스템에서 청구 입력(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임. 또한, ③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경우 장애인 또는 보조기기 판매자가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알기 곤란하며, 장애인 또는 보조기기 판매자가 3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건들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임. 그리고 ④ 부가급여(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임신한 때 신청에 의해 바우처 형태로 이용권을 제공하고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사용가능하며, 분만예정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통계가 없다는 설명임.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환급의 경우 보험급여로서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에서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5판 2024년, p.1371)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금의 경우 2018~2021년 지급 결정된 금액은 총 6.7조원에 이룸.

< 최근 5년 간 보험료·연체금·가산금 환급금 등 소멸시효 완성 현황 >

2025.12.31. 기준,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보험료· 연체금·가산금 환급금	건수(천건)	70	33	100	50	56	309
	금액(억원)	74	14	25	29	27	169
보험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환급 ⁸⁾)	건수(천건)	6	12	15	24	-	58
	금액(억원)	62	103	122	150	-	437
보험급여 비용	건수(천건)	3	4	6	5	10	28
	금액(억원)	4	4	5	7	9	28
본인일부 부담금 환급금	건수(천건)	43	61	85	88	115	392
	금액(억원)	7	8	13	15	15	58

* 각 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전에 발생한 권리임.

**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등이 있으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 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완성 통계는 없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금 관련 2025년 소멸시효 완성 통계는 전산처리 중으로 현재 파악 불가하며, 제시된 통계는 2026년 1월 기준 통계임.

*** 보험급여비용은 요양급여비용과 건강검진비용으로, 이 중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11월 말 기준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재구성(수치는 반올림 처리되었으므로 합계와 세부 항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 개정안은 이 중 ②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③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④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8)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환급의 경우 보험급여로서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에서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5판 2024년, p.137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진 것이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이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당초 보험료 등을 환급받을 권리 등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한 것은 공단과 가입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⁹⁾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자 단기보험¹⁰⁾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9)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구법 제1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공단의 재정은 수입·지출계획인 예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1년 단위의 회계연도로 편성되어 시행된다(구법 제33조 제1항). 그런데 과오납 보험료 환급의무가 발생한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도 언제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감소되어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3년이라는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가입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10) 국회 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p.9

“사회보험은 제도별로 적용 기간에 차이가 있다. 연금제도는 피보험자가 수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와 불입기간에 근거하여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며, 이렇게 획득한 급여를 사망 시까지 장기간 수급하는 등 장기보험의 특징을 보인다. 반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은 회계연도별로 지출을 예측하여 보험료 가액이 확정되고, 급여수급권이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하는 단기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단기보험은 매년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단기보험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보험료 불입기간과 급여 수급권에 관계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필요로 한다”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1)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단, 산재보험 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제외), 보험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¹²⁾.

[그림 4] 사회보험의 적용 기간

	장기보험	단기보험
개념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수급권 획득 여부가 달라지고, 급여수급 역시 장기간에 걸쳐 발생	회계연도별로 지출을 예측하여 보험료 가액이 확정되고, 급여수급권이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
주요 제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1)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12) 참고로, 「국민연금법」은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각 개정안과 같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하여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모두 사회보험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목적, 가입대상, 급여의 성격, 재정조달방식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세와 건강보험료는 공공의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강제로 징수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 성격, 부과주체, 적용원리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과오납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한 바 있음.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자격변동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자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각 자격 간 보험료 산정방식¹³⁾, 보험료 부담 주체¹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보험료는 환급하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새로이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만일 과오납 보험료 등을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3년)는 완성되고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의 연장된 소멸시효(5년)는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격이 잘못되어 있었음이 밝혀지면 과오납된 보험료는 환급하여야 하나, 재산정된 보험료는 새로이 부과·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1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 14)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본 개정안은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행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시효를 연장할 경우 보험료의 정산과 권리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고, 매년 추가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지출 증가는 재정추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울러,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또는 환급금을 지급신청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해외 출국, 시설수용, 거주불명 등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가 있는 경우 그 시효를 연장하여 지급하고 있고, 현행 고용·산재보험은 여전히 징수와 환급 모두 3년의 소멸시효를 따르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만 연장될 경우 보험료 통합 고지 및 환급 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혼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민연금에 걸쳐 가입기간을 산정하는 장기보험으로 가입자의 권리 보호 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건강보험은 매년 보험료와 급여가 완결되는 단기보험으로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법률관계가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12.11.29. 자 2011헌마 814).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효연장을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한 개정안에 취지에 공감함.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시효 연장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경우 반대채권인 보험료 등의 징수할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타당해 보임.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채권을 5년으로 연장할 경우, 가입자가 3년이 지난 이후 자격변동 지연신고 등으로 환급청구를 한다면 변동된 자격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부과권이 완성되어 부과할 수 없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격변동 등에 대한 지연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음.
- 둘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경우 보험급여의 종류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뉘는데, 현물급여는 치료, 약제의 조제 등의 의료서비스 그 자체가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급여를 받을 권리는 치료, 즉 급여실시와 동시에 충족되어 소멸시효를 인정할 실익이 없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17-0100호(2017. 6. 5.)¹⁵⁾]에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 등¹⁶⁾을 받을

15) 법제처 17-0100호(2017. 6. 5.)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 외에 가입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상관

권리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시효연장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음.

- 셋째,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경우 보험급여 비용이란 요양급여비용과 건강검진비용을 말하며, 해당 비용을 받을 권리는 각각 요양기관과 검진기관의 권리를 말하는데, 요양기관과 검진기관이 일반적으로 3년을 도과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민법」 제164조(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따르면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바, 채권의 상대방에 따라 시효를 달리 적용할 이유도 없어 보임. 특히, 「민법」 제164조의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래 현실을 반영한 변제의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역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3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넷째,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경우, 공단은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 발송 건 중 90% 이상은 5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고, 1만원 이하 소액채권이 매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공단이 모든 지급대상에 대하여 디지털

없이 진찰·검사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다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따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입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상관없이 진찰·검사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다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따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16)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출산·진료비(부가급여),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가 이에 해당하고, 성격이 불명확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환급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고지, 등기우편을 포함한 우편 고지를 통해서 최대 5차례 환급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효 연장에 따른 효과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다섯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¹⁷⁾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5년간 서류를 보존하게 되어 있지만, 약국,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준요양기관,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3년간 서류를 보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시효가 연장된다면 약국 등에 대한 서류보존 시효도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는 약국 등의 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한의사협회

-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전반적으로 찬성함. 건강보험 제도는 소득자료 연동, 자격 변동, 행정절차 및 불복 절차 등으로 인해 권리관계의 확정지연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가입자 및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해 왔음. 이러한 점에서 국세 및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선으로 판단됨.

17)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연장이 곧바로 환수 대상 기간의 확대나 행정제재 범위의 확장으로 연결되고 운용될 경우 의료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착오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청구까지 과도한 환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환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운영상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